

학업부진자 지원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재학생 중 학업부진자(성적불량으로 학사경고를 받았거나 학업에 충실하지 않은 학생)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업무와 관련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개정 2017.06.29.>

제2조 (명단통보) ① 학생상담센터는 2회 연속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을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담임지도교수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5.>

② 교무처는 중간고사 후 1주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학업부진요인을 가진 학생의 명단을 제출받아 담임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교무처는 당해학기 성적처리가 마감된 후 1주일 이내에 학사경고자 명단을 해당 담임지도교수, 교수학습개발센터, 학생상담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
<전문개정 2017.06.29.>

제3조 (지도) ① 지도 학생의 2회 연속 결석을 통보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학업부진요인 학생을 통보받은 담임지도교수는 2주 이내에 학업부진 요소가 없는지 상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.<개정2017.06.29.>

③ 학업부진자의 지도를 위해 담임지도교수는 해당부처에 자료제공이나 기타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개정2017.06.29.>

④ 담임지도교수가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임명된 담임지도교수에게 학업부진자의 지도를 인수인계하여야한다.<개정2017.06.29.>

제4조 (기록) 담임지도교수는 제2조의 학업부진자를 지도한 후 반드시 상담일지에 지도사항 등을 매 회 기록하여야한다.<개정2017.06.29.>

제5조 (사후평가) 학업부진자를 지도한 담임지도교수는 학기말에 사후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2017.06.29.>

제6조 (상담 일지의 관리) 작성된 상담일지와 상담 진행 결과 등은 학생상담센터에서 관리한다.<개정2017.06.29.>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의 폐지) 본 규정의 폐지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재가에 의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학사경고자 지도규정의 제명을 학업부진자 지원규정으로 변경하여 201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의 폐지) 본 규정의 폐지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재가에 의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